

노스캐롤라이나주 평가위원회

- 1 11	_ &_ = = = = =
OLTI.	그이나구경서버경
의제:	고위당국결정번호

수신:

원고 고용주

사례진술:

원고는실업보험혜택에대한새로운클레임 (NIC)을유효하게제출했습니다 .그후,고용안전부("Division")는원고에게지불할주 간혜택이\$임을결정하고, 원고가설정한수혜기간동안원고에게지불할수있는실업보험혜택의최대금액은\$임을결 정하였습니다.

이클레임은마지막취업에서의퇴직문제에대한판결자에게회부되었습니다.판결자는원고가혜택을받기에(자격이있다는) (자격이없다는)서류번호의판결자결정을내렸습니다.원고/고용주는이결정에대한항소를제기하였으며,이문제는항소번호에따라항소심판에게제출되었습니다.다음과같은개인들이청문회에서항소심판앞에출석하였습니다: . 일,항소심판은 N.C. Gen. Stat. § 96-14.9(d)에따라원고가실업보험혜택을받기에(자격이있다는) (자격이없다는)결정을내렸습니다.(원고) (고용주)가항소하였습니다.

발견한사실:

1. 원고는부터까지의기간동안지속적인클레임을제기하였습니다.원고는본부와함께일신청을했으며,본부에서요청한대로취업사무실에보고를계속하고,N.C. Gen. Stat. \S 96-15(a)에따라혜택클레임을신청하였습니다.



고위당국결정번호 4 페이지중 2

법의규정:

노스캐롤라이나의고용안전법은개인이다음중하나또는그이상에해당되는주중에는 일을할수없음을규정합니다:

- (1) 개인이규제약물검사에대해양성반응을보인다.개인은다음과같은세 분화가모두적용되는경우규제약물검사에대해양성반응을보인다고용주 는규제약물에대한개인의양성반응을본부에보고해야한다. a. 이검사는일반규정(General Statutes) 제 95 조(Chapter) 제 20 항(Article)에따라관리되는규제물질검사이다. b. 이검사는고용을위한고용조건으로요구된다. c. 해당직업은해당개인에게적합한업무이다.
- (2) 개인이감금되었거나,보고할통지를받았거나,또는그렇지않으면주또 는연방감옥또는형사시설에억류된다.이세분화는카운티교도소에서주말 에만감금되어그렇지않은경우일할수있는개인에게는적용되지않는다.
- (3) 개인은외국인이며미법무부이민국에서관리하는법에따라만족되는출 입국상태가아니다.
- (4) 개인은직원의잘못이며업무와관련이있고행해진행위또는행해지지않은행위로인해 30 일이상의징계처분에있다.

N.C. Gen. Stat. § 96-14.9(d).

법의결론:

아래서명자는적합하고믿을만한증거및발견된사실들을통해원고에대하여다음과 같은결론을내립니다

앞서언급한내용대로,항소심판의결정은(확인되어야/ 뒤바뀌어야/수정되어야)합니다.더나아가,원고는실업급여혜택수혜에대해(자격이있습니 다) (자격이없습니다).

결정:

항소심판의결정은(**확인되었습니다**) (**뒤바뀌었습니다**) (**수정되었습니다**).



고위당국결정번호 4 페이지중 3

원고는로끝나는주(들)의실업보험혜택을받기에**자격이있습니다**. (로끝나는주(들)의실업보험혜택을받기에**자격이없습니다**.

평가위원회의의원 Fred F. Campbell 이항소에참여하여이결정에동의합니다. 및 Steen. П Stan

0].

평가 위원회

위원장

주의:이 고위 당국 결정은 법원의 재심을 위한 청원이 아래에 설명된 것처럼 고등법원에 제출되지 않는 한,우편 발송 후 삼십 (30)일 이후에 최종 결정될 것입니다.우편발송 날짜는 이 결정서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u>위원회가 법률 자문을제공하지는 않지만,고위 당국 결정에 항소하는 방법에 대한 추가 안내는 동봉된팜플렛을 참조하십시오</u>.해당팜플렛은 주 전역의 공공 고용 사무소 및 고용 안전부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또한 귀하는 <u>www.des.nc.gov</u>를 통해 고용 안전부웹사이트 자주 묻는 질문 섹션을 방문하여 귀하가 선택한 변호사와 상의할 수 있습니다.

사법 심사를 위한 항소 권리

이 고위 당국 결정에 대한 항소는 청원자로부터 그 또는 그녀가 거주하는, 또는 청원자의 주된 사업 장소가 있는 카운티 고등 법원 사무관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당사자가 노스 캐롤라이나 주 어느 카운티에도 거주하거나 주된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다면,항소는 노스 캐롤라이나 주 웨이크 카운티의 *또는* 논쟁이 일어난 노스캐롤라이나 카운티의 고등 법원 사무관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 고위 당국 결정은 N.C. Gen. Stat. §§ 96-15(h) 및 (i)에 의거하여,법원의 검토를 위한 청원서가 적시에 고등 법원에 제출되지 않는 한,삼십 (30)일 이후에 최종 결정될 것입니다.

고등 법원 사무관에게 제출된 사법 심사 청원서 사본은 청원 접수 후 십 (10)일 이내에 고용 안전부 ("Division") 및 소송에 기록된 모든 당사자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청원서 사본은 개인적 서비스 또는 공인 우편으로 송달 받아야 하며, 수령 확인이 요청됩니다.고등 법원 검토를 위한 청원은 반드시 해당 부서의 업무 처리를 위해 등록된 요원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Chief Counsel

North Carolina Department of Commerce

Division of Employment Security

우편 주소: Post Office Box 25903, Raleigh, NC 27611-5903 실제 주소: 700 Wade Avenue, Raleigh, NC 27605-1154

중요 - 다음 장을 보십시오

고위 당국 결정 번호 4 페이지 중 4

주의:귀하가 다른 당사자의 사법 심사 청원서를 받은 경우,귀하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 심사 절차 당사자가 되지 않습니다: (1) 귀하가 심사 당사자가 되기를 원하는 청원서를 받은 후 십 (10)일 이내에 고등 법원에 통보하는 경우, 또는 (2) N.C. Gen. Stat. § 1A-1, Rule 24 에서 제공된 것과 같이 개입하기 위한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모든 이해 당사자에게 통지

04 N.C. Admin. Code 24A .0105(32) (고용주의 실업 보험 관리자로 일하는 제 3 자의 개인 포함)에 정의된 법정 대리인은 면허가 있는 변호사이거나 N.C. Gen. Stat. Ch. 84 및§ 96-17(b). 에 따라 면허가 있는 변호사가 감독한 사람이어야 합니다.변호사감독의 통지 및 / 또는 증명은 04 N.C. Admin. Code 24C .0504 에 따라 서면으로이루어져야 합니다.**사법 절차의 법적 대리는 N.C. Gen. Stat. Ch. 84 를 준수하여야합니다.**

04 N.C. Admin. Code 24C .0504 에 의거하여, 당사자에게 법정 대리인이 있는경우,당사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모든 서류 또는 정보는 법정 대리인에게만발송됩니다.당사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제공 되는 모든 정보는 당사자에게 직접 발송된것과 동일한 효력과 영향을 가집니다.

2013 년 6월 **30일** 이후에 제기 된 클레임의 경우,원고는 이후 항소에서 취소된 행정 또는 사법 결정에서 수령된 급여의 상환 대상이 됩니다.N.C. Gen. Stat. § 96-18(g)(2).

원고에 대한 특별 통지: 귀하가 근본 클레임에 관련하여 실업 보험 급여를 수령하고 있거나 이전에 받았고,이 고위 당국 결정이 그러한 혜택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귀하를 부적격 또는 실격으로 규정하는 경우,귀하는 N.C. Gen. Stat. § 96-18(g)(2)에 의거하여 혜택을 초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이 고위 당국 결정에 의해 초과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귀하는 해당 부서의 혜택 무결성 / 혜택 지불 통제 섹션으로부터 초과 지급 통지 또는 초과 지급 결정 통지서를 별도의 우편으로 받게 됩니다.초과 지불 통지 또는 초과 지급 결정 통지서는 다른 것들과 더불어,귀하의 초과 지급 액수와 적용되는 처벌을 명시 합니다.귀하가 초과 지급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위에 제시된 것과 같이,그리고 노스 캐롤라이나 법에 따라, 이 고위 당국 결정의 사법 검토 청원을 제기하는 것뿐임을 알려드립니다.귀하의 청원서에서,귀하는 항소가 (1) 실격 또는 자격의 문제 및 / 또는 (2) 귀하가 초과 지급을 받았음에 대한 최종 결정에 대한 것인지 여부를 명시해야 합니다.

항소 제기: 결정 전달: